건축설계산업의 위기와 전망

이 정면 | (주)범건축 대표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추진 배경

1. OECD 27 개 국가 중 21위인 건축설계산업 규모
2. 건축 설계 전문 인력 양성과 위상 제고
3. 중.소 규모 설계사무소의 현실 개선
4. 대외 경쟁력 강화
5. 세계적 건축인의 배출과 지원

국내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설계산업 위상 정립

1. 건축은 문화입니다.
2. 건축은 사회를, 사회는 건축을 만듭니다.
3. 건축은 당대 기술이 종합된 결정체입니다.
4. 건축은 인문학의 꽃입니다.
5. 건축은 고부가가치의 지식산업입니다.

→ 건축은 그 나라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 줍니다.

국내 건축설계산업 육성 방안

설계산업 제도 개선

1. 적정 설계비 확보
2. 설계 시장에서의 장벽 완화
3. 설계 공모 제도 개선
4. 인허가 제도 개선
5. 건축사 자격 관련 제도 개선

기본방향

설계산업 제도 개선 -1

적정 설계비

1. 성과물과 법적 행위 중심

   → 업무 위주로 산정 (소요 인원과 기간)

2. 건축인 스스로의 정화와 품질 개선 노력

3.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기대됨

   →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기본방향

설계산업 제도 개선 -2

설계 시장에서의 장벽 제거

1. 실적 제한에 대한 보완
2. 재정 건전도 (신용 등급 기준) 적용 기준 완화
3. 실적의 실명화 (회사가 아니라 개인으로)
4. 공공 사업의 경우, 신진 건축사에 대한 배려 정착

기본방향

설계산업 제도 개선 -3

설계 공모 방식 개선

1. 국가계약법 보완, 설계의 경우, 가격 경쟁 제외
2. 설계안 선정에서 설계자 선정으로
3. 제출물 합리화
4. 심사위원 사전 공개 의무화

기본방향

설계산업 제도 개선 -4

건축 인허가 제도 개선

1. 자기 인증제의 적극 도입 – 건축사 책임 인증제
2. 순환 근무제에 대한 보완 – 전문가 양성
3.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4. 계획 심의 제도 개선
   –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규정

기본방향

설계산업 제도 개선 -5

건축사 자격 관련 제도 개선

1.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유지
2. 개인 경력 관리 제도의 확립과 실명제 도입
3. 건축사 업무 범위 확대 – 공무원, 금융권 등
4. 건축 관련 단체의 자구 노력 – 열린 단체로

기본방향

해외에서는??? -1

미국의 발주제도

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The Brooks Act

- 설계와 시공을 분리, 1단계 선정을 통한 독립 계약 원칙
- 특별한 상황에 한해 2단계 선정 방식인 design-build 도입
  → 1단계에서는 능력, 경험, 경쟁력 등만을 평가
  → 최대 5개 팀 이내로 선정
  → 2단계에서 디자인이나 기술적 제안을 평가
- 자격 조건 기준 선정 방식
- 가격은 마지막 고려 대상이거나 선정 기준이 아님

해외에서는??? -1

미국의 인허가제도

자기인증제도가 근간임
- →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정
- → 별도의 도면 심사 없이 건축허가 완료

New York City의 경우
- → Zoning officer와 사전 협의 (20년 이상 경력자들, 건축사임)
- → Dept of Buildings(DOB)에서 NYC Code 부합 여부 검토
- → Plan Examiner가 도면을 검토한 후 허가
- → 자기인증 신청 가능 (Self-examine)

해외에서는??? -2

일본의 발주제도

프로포절 방식

- 설계안이 아니라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식
-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 가능
-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실시 방법에 대한 제안
- 선정 이후, 발주자와 공동 작업이 가능

→ 공모형, 간이공모형, 간이공모형(확대), 표준 등 4개의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해외에서는??? -2

일본의 인허가제도

지정확인검사기관 제도 시행

- 건축주사의 업무량 과다 해소 차원에서 도입
- 일본건축센터 등 민간 기관
-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의뢰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인허가 업무를 민간인에게 개방
→ 업무의 투명성 제고

설계 경쟁력 강화 -1

친환경 건축/ 지속가능한 건축

친환경 건축, 에너지 저소비 건축, 지속가능한 건축
→ 건축사(가)가 주도하여 조정, 실현할 내용임.

현행 관련 인증, 인가, 허가 등의 절차 합리화

건축사 중심의 인증원 설립

건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설계 경쟁력 강화 -2

BIM 설계 기법의 조기 정착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필수

관련 프로그램 및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

→ 세제 상의 혜택, 실손 처리, 면세 수입 등…

건축 자재, 상세, 시방 등의 표준화 및 dB화

국내 건축 자재 업체와의 공조 강화

국제 표준 규격 도서 의무화 – 프로그램 독점 방지

건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설계 경쟁력 강화 -3

건축법인 제도 도입

전문직종의 경우, 전문가만이 회사 설립 가능

의료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일반 주식회사로서 상법 적용 대상

→ 공동 지분 설정과 지분 이동에 제한적임

→ 외국식 “파트너제” 실현의 최대 걸림돌

건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설계 경쟁력 강화 -4

해외 사업에서의 국가 지원

대사 및 영사 업무에 건축 설계 지원 업무 보완

수주 관련 정보에 대한 우선 공유

금융 지원 활성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간의 과다 경쟁 조정

해외 원조 사업에서의 건축사 역할 제고 및 설계비 현실화

건축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차원의 산업 발전 전략

- 건축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 5개년
- 산업 동향 정보 체계 구축
- 건축의 가치 인식 전환 – 건축문화박물관 등

국제 경쟁력 향상 정책

- 글로벌 전문가 육성 – 신진 건축인의 발굴과 육성
-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신기술 개발지원

해외 진축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 해외 수주 지원 센터 설립
- 민간 단체의 연합체 구성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

건축 서비스 산업 위상 구축 – 법령 정비와 제정

- 건축 서비스 산업의 개념 정립
-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서의 산업적 위상 정립
-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효율적 산업 지원 체계 구축

- 공공발주 제도의 정비와 개선
- 건축 행정 효율성 제고
- 글로벌 건축 전문가 육성 기반
- 건축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식, 정보 및 기술 선진화 지원
- 국가 차원의 해외 진축 전략 수립
- 해외 수주 지원 센터 설립

단계별 추진 방안과 그 과제